

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227호)

○ 2001.11.14.
○ 총무재무위원회
위 원 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 10.18 서초구청장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01. 10.22

다. 상 정 일 자 : 2001. 11.14

라.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 : 제116회 임시회 제2차총무재무위원회(1회1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가. 제안이유

- 시군구행정조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되는 민원서류의 수수료납부방법 등을 개정함으로써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설치 운영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제1항)
-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수입증지요금, 발행기관명,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고유번호를 표시하도록 함. (안 제3조제2항)
-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에 고시하도록 함. (안 제3조제3항)

3.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민원증명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서비스를 청구증명에서 다양한 서비스체제로 전환하는 무인민원증명제도의 시행에 따른 수수료납부등 관련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추가하는 내용임. (안 제3조제1, 2, 3항)

□ 검토의견

- 위 내용을 검토한바
 -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2에 무인민원 발급기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 행정자치부의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용 무인민원발급시스템 운영지침 (2000.12)에 따라 우리구에도 무인민원증명발급기 2대를 우선 설치(소요액: 53백만원중 국비 1천만원 포함)하고 시험 가동후(시험설치장소:민원여권과, 서초1동 민원실) 2002. 1부터 정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 발급대상은 토지대장등 6종이나 추후 32종으로 확대 예정이며, 민원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것임.

- 위 무인민원증명발급을 위한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조례중 다음과 같이 수정함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 조례 제4조제1항중 “수입증지 및 요금계기는”을 “수입증지 및 요금계기와 무인발급기는”으로 수정하고,
 - 동조 제3항의 “구청장은 요금계기를 사용하고 있는 담당관, 과, 보건소, 등에 요금계기 관리책임공무원을 둔다”를 “구청장은 요금계기 및 무인발급기를 사용하고 있는 담당관, 과, 보건소, 등에 요금계기 관리책임공무원 및 무인발급기 관리책임공무원을 둔다”로 수정하며,
 - 동조 제4항중 “수입증지취급공무원 및 요금계기 책임공무원의 임명”을 “수입증지 취급공무원 및 요금계기 책임공무원과 무인발급기 책임공무원의 임명”으로 수정,
 - 동조 제5항중 “수입증지 및 수입증지요금계기에 의해”를 “수입증지 및 수입증지 요금계기와 무인발급기에 의해”로 수정
 - 제9조중 “다만 요금계기에 의하여”를 “다만 요금계기 및 무인발급기에 의하여”로 수정
 - 제11조중 “요금계기 관리책임공무원으로”를 “요금계기 관리책임공무원과 무인발급기 관리책임공무원으로”로 수정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무인증명발급기 설치비 5,300만원중 1,000만원은 국비라면 나머지는 구비인지와 무인증명발급기 설치 장소를 민원이 많은 구청1층 민원실 및 터미널, 서초전철역 등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 변경 설치할 용의는?

답) 소요예산 5,300만원중 1,000만원은 국비이고 4,300만원은 구비이며, 서초1동은 법원검찰청이 가까워 민원이 제일 많은 곳으로 시범 설치 운영후 문제점이 있는가를 검토하여 문제점이 없다면 확대설치할 예정임.

질) 소요예산 4,300만원은 어떤 세목에서 기계를 구입할 것인지?

답) 무인민원발급기는 자산취득비이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1월에 서초1동과 민원여권과에 설치할 예정임.

질) 서초1동은 법원검찰청과의 거리가 멀어 민원수요가 많지 않을것으로 판단되는데 각동별로 민원수요를 파악하고 있는지와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추가로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추가수정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답) 서초1동은 적은 직원수에 비해 평소 외부인의 FAX민원 등이 많아 간부회의에서도 거론된바 있으며,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함.

5. 토론자 및 토론요지

○ 수정동의안 발의(발의자 : 정길자 의원)

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중 조례 제4조 제1항중 “수입증지 및 요금계기는”을 “수입증지 및 요금계기와 무인발급기는”으로 수정하고 제4조 제3항의 “구청장은 요금계기를 사용하고 있는 담당관, 과, 보건소,

동에 요금계기 관리책임공무원을 둔다”를 “구청장은 요금계기 및 무인발급기를 사용하고 있는 담당관, 과, 보건소, 동에 요금계기 관리책임공무원 및 무인발급기 관리책임공무원을 둔다”로 수정하며 제4조 제4항중 “수입증지 취급공무원 및 요금계기 책임공무원의 임명”을 “수입증지 책임공무원 및 요금계기 취급공무원과 무인발급기 책임공무원의 임명”으로 수정하고 제4조 제5항중 “수입증지 및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해”를 “수입증지 및 수입증지 요금계기와 무인발급기에 의해”로 수정하고 제9조중 “다만 요금계기에 의하여”를 “다만 요금계기 및 무인발급기에 의하여”로 수정하고 제11조중 “요금계기 관리책임공무원으로”를 “요금계기 관리책임공무원과 무인발급기 관리책임공무원으로”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의제성립)

6. 수정안의 요지 : 별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만장일치)

8. 소수의견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체계자구정리내용 : 없음